

6. 교원신규채용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하“인사규정“이라 함)에 정한 신규교원의 채용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교수 확보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인사규정에 정하고 있는 교원 중 전임교원의 채용에 적용한다.(2019.7.23.자구수정 및 삭제)

제3조(채용방법) ① 채용이라 함은 계약 대상자 선정을 의미한다.

② 교원의 채용은 정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정규채용”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학의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교수요원을 대학의 공개채용 절차에 의하여 채용함을 말한다.

④ “특별채용”이라 함은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학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학문분야의 개설 또는 대학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자를 교수요원으로 초빙하는 것을 말한다.

⑤ “강의전담교원 및 연구전담교원”의 채용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내규에 따른다. (2017.12.15.추가삽입)

제4조(채용시기) ① 정규채용은 매 학기에 공개채용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2.6.21.개정)

② 특별채용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교무입학처장의 추천에 의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019.2.8.개정)

제5조(채용자격기준) ① 교원의 채용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공히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정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자(2019.7.23.자구수정)

2. 박사학위 취득자. 단, 특수분야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삭제>(2022.6.21.삭제)

② 교원채용은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전공학문 분야의 연구실적 및 활동사항

2. 강의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2022.6.21.개정)

3. 법령의 준수 여부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2022.6.21.개정)

4.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문과 대학 발전의 기여 능력 등

제6조(채용범위)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대학의 교원채용계획 범위 안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정규채용

제7조(채용분야) ① 각 전공의 교원채용분야는 교양학부 및 학부(과) 교원과의 협의를 거쳐 학부장 및 학과장이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교무입학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019.2.8.개정)(2020.4.21. 개정)(2022.6.21.개정)

② 교무입학처장은 학부(과)로부터 추천한 채용분야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2019.2.8.개정)(2020.4.21. 개정)(2022.6.21.개정)

제8조(공고) 교무입학처장은 제7조 제2항을 근간으로 한 채용공고 문안을 작성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019.2.8.개정)

제9조(지원서류) 신규채용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은폐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교원은 채용의 취소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이력서 (본교 소정 양식)
2. 교육 및 연구계획서
3. 학부 및 대학원과정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최종 학위과정 지도교수 1인을 포함한 2인의 추천서
5. 연구 업적 목록
6. 연구 업적물(학위논문, 저서, 출판된 논문 등)
7. 가족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제10조(지원서류접수) ① 공고문안에 명시된 지원서류는 교무입학처에서 일괄 접수한다. (2019.2.8.개정)

② 교무입학처장은 필요에 따라 교원채용 대상자와의 접촉, 권유, 지원서 또는 이력서 접수 등을 할 수 있다. (2019.2.8.개정)

제11조(평가절차) 평가는 아래 각 항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① 1차평가 : 전공 적부심사
- ② 2차평가 : 연구실적 평가
- ③ 3차평가 : 연구논문평가
- ④ 4차평가 : 강의평가
- ⑤ 5차평가 : 면접평가

제12조(후보평가위원회) 교무입학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심사를 위하여 후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지원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08.3.1.자구수정)(2019.2.8.개정)

① 위원회구성

1. 1-2차 평가위원은 해당 전공 소속 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
2. 3차 평가위원은 교외 해당분야 전공 학자를 복수로 추천한다.
3. 4-5차 평가위원은 교내 추천인사로 구성한다.(2021.12.23.개정)

② 평가

1. 1-2차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지원서류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전공학문 분야의 적합성, 건학이념의 구현 및 학문과 대학 발전의 기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2. 교무입학처장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내의 우수한 후보자를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3차 평가 후보자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8.3.1.자구삽입)(2019.2.8.개정)
3. 3차 평가는 후보자들의 대표적인 연구실적물을 국내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복수로 평가를 의뢰한다.
4. 4-5차 평가는 후보자들의 공개강의 및 면접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전문성, 독창성, 참신

성, 교육자적 자질 및 인성 등을 평가한다.

(2017.12.15.삭제).

③ 제12조 제2항에 정한 평가절차에 의거 평가한 결과 우수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원채용절차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최종결정) ① 제12조 제2항의 평가절차에 의하여 평가된 후보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여부를 심의하고, 교원인사위원장은 그 심의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의거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사장에게 제정하여 최종 승인을 요청한다.

제 3 장 특별채용

제14조(특별초빙) ① 특별채용은 원칙적으로 교무입학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2019.2.8.개정)

② 새로운 연구분야의 도입 등 필요한 경우 총장은 그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특별초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채용 당시에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채용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기밀보안) 교원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밀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이 세칙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세칙 제정 이전에 실시한 업무 등은 이 세칙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